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소방공무원징계령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시·도 징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, 징계 심의·의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, 징계위원회 심의의 효율적 진행 및 징계 등 사건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징계 등 사건에 대한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

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단서 중 “소방준감”을 “소방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1호나목 중 “정교수”를 “부교수”로 하며,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민간부문에서 인사·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
제4조제4항제2호나목 중 “부교수”를 “조교수”로 하고,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민간부문에서 인사·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
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3(우선심사) ①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징계등 사건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(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신청할 수 있다.

②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정년(계급정년을 포함한다)이나 근무기간 만료 등으로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에 있는

징계등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해야 한다.

③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우선심사 신청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

⑤ 제4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징계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징계등 사건을 우선심사해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우선심사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의3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9조에 따라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징계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	제4조(징계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(동일계급의 경우에는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)가 된다. 다만, 제2조제3항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해당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<u>소방준감</u>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<u>소방정</u> ----- ----- ---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. 이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
1. 소방청 및 시·도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	1. ----- ----- -----

가. (생 략)

나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
따른 학교(이하 “대학”이
라 한다)에서 법률학·행
정학 또는 소방 관련 학문
을 담당하는 정교수 이상
으로 재직 중인 사람

다. (생 략)

<신 설>

2. 중앙소방학교·중앙119구조
본부·국립소방연구원·지방
소방학교·서울종합방재센터
·소방서·119특수대응단 및
소방체험관에 설치된 징계위
원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
에 해당하는 사람

가. (생 략)

나. 대학에서 법률학·행정학
또는 소방 관련 학문을 담
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
재직 중인 사람

다. (생 략)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-----

----- 부교수 -----

다. (현행과 같음)

라. 민간부문에서 인사·감사
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
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
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
람

2. -----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-----

----- 조교수 -----

다.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⑤ ~ ⑦ (생 략)

<신 설>

라. 민간부문에서 인사·감사
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
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
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
람

⑤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13조의3(우선심사) ① 징계등
의결 요구권자는 신속한 징계절
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
징계등 사건에 대하여 관할 징
계위원회에 우선심사(다른 징계
등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하는
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신청
할 수 있다.

②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정
년(계급정년을 포함한다)이나
근무기간 만료 등으로 징계등
심의 대상자의 퇴직 예정일이 2
개월 이내에 있는 징계등 사건
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
우선심사를 신청해야 한다.

③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혐의
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관
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
청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

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
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우선심
사 신청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
제출해야 한다.

⑤ 제4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
서를 접수한 징계위원회는 특별
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징계등
사건을 우선심사해야 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소방청 운영지원과	
연 락 처	(044) 205 - 7044